

2022년도 날씨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회계처리 예시>

사업에 참여하시는 수요기업 및 수행기업에서는 아래 회계처리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날씨경영 솔루션구축 지원 사업	정부보조금 49,000,000원
----------------------------	--------------------------

case 1	정부보조금 49,000,000원, 회사부담금 <u>현물 21,000,000원</u> / 총 70,000,000원 부가가치세 4,900,000원 (부가가치세는 회사부담금과는 별개로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며 추후 환급받음)
---------------	---

< 솔루션구축 지원사업 수요기업 >

아래의 보통예금(정부보조금)과 소프트웨어(정부보조금)은 아래와 같이 재무상태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됨.

(소프트웨어(정부보조금)/소프트웨어 비율=70%)

<재무상태표>-아래사항 예시

과 목	금 액
<당좌자산>	
보통예금(1억잔고 가정함)	100,000,000
보통예금(정부보조금)	-
	100,000,000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67,666,667
소프트웨어(정부보조금)	(47,366,667)
	20,300,000

(1) 기술원이 수행기업에 솔루션구축 지원사업비 입금시(아래의 1)과 2) 동시처리			
1) 정부보조금입금 (가상거래)			
차변)보통예금	49,000,000	대변)보통예금 (정부보조금)	49,000,000
2) 수행기업에 정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입금으로 처리			
차변)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49,000,000	대변) 보통예금	53,900,000
부가세대급금	4,900,000		
차변) 보통예금 (정부보조금)	49,000,000	대변)소프트웨어 (정부보조금)	49,000,000
(2) 수요기업 현물출자 시			
차변) 급여	21,000,000	대변)보통예금	21,000,000
차변)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21,000,000	대변)급여	21,000,000
(3) 부가세대급금 입금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입금됨			
차변)보통예금	4,900,000	대변)부가세대급금	4,900,000
(4) 소프트웨어 상각-구축완료 후 5년(60개월)상각 가정 (2022년10월말 구축, 11월부터 시스템사용으로 2개월상각 가정)			
차변)무형자산상각비	2,333,333 (=70,000,000/60*2)	대변)소프트웨어	2,333,333
차변)소프트웨어 (정부보조금)	1,633,333 (=49,000,000/60*2)	대변)무형자산상각비	1,633,333

< 솔루션구축 지원사업 수행기업 >

(1) 수행기업이 수요기업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기술원과 수요기업으로부터 입금 시			
차변)외상매출금	53,900,000	대변)용역매출 (시스템구축매출)	49,000,000
		부가세예수금	4,900,000
차변)보통예금	53,900,000	대변)외상매출금	53,900,000
(2) 부가세예수금 납부시 - 부가가치세 신고 후			
차변)부가세예수금	4,900,000	대변)보통예금	4,900,000

case 2	정부보조금 98,000,000원, 회사부담금 현금 12,000,000원, 현물 30,000,000원 / 총 140,000,000원, 부가가치세 11,000,000원 (부가가치세는 회사부담금과는 별개로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며 추후 환급받음)
--------	---

< 솔루션구축 지원사업 수요기업 >

아래의 보통예금(정부보조금)과 소프트웨어(정부보조금)은 아래와 같이 재무상태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됨.

(소프트웨어(정부보조금)/소프트웨어 비율=70%)

<재무상태표>-아래사항 예시

과목	금액
<당좌자산>	
보통예금(1억잔고 가정함)	100,000,000
보통예금(정부보조금)	-
	100,000,000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135,333,333
소프트웨어(정부보조금)	(94,733,333)
	40,600,000

(1) 기술원이 수행기업에 솔루션구축 지원사업비 입금시(아래의 1)과 2) 동시처리			
1) 정부보조금입금 (가상거래)			
차변)보통예금	98,000,000	대변)보통예금 (정부보조금)	98,000,000
2) 수행기업에 정부보조금과 회사부담금 입금으로 처리, 부가가치세는 별도입금			
차변)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110,000,000	대변) 보통예금	121,000,000
부가세대급금	11,000,000		
차변)보통예금 (정부보조금)	98,000,000	대변) 소프트웨어 (정부보조금)	98,000,000
(2) 수요기업 현물출자 시			
차변) 급여	30,000,000	대변)보통예금	30,000,000

차변)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30,000,000	대변) 급여	30,000,000
(3) 부가세대급금 입금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입금됨			
차변)보통예금	11,000,000	대변)부가세대급금	11,000,000
(4) 소프트웨어 상각-구축완료 후 5년(60개월)상각 가정 (2022년10월말 구축,11월부터 시스템사용으로 2개월상각 가정)			
차변)무형자산상각비	4,666,667 (=140,000,000/60*2)	대변)소프트웨어	4,666,667
차변)소프트웨어 (정부보조금)	3,266,667 (=98,000,000/60*2)	대변)무형자산상각비	3,266,667

< 솔루션구축 지원사업 수행기업 >

(1) 수행기업이 수요기업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기술원과 수요기업으로부터 입금 시			
차변)외상매출금	121,000,000	대변)용역매출 (시스템구축매출)	110,000,000
		부가세예수금	11,000,000
차변)보통예금	121,000,000	대변)외상매출금	121,000,000
(2) 부가세예수금 납부시 - 부가가치세 신고 후			
차변)부가세예수금	11,000,000	대변)보통예금	11,000,000



날씨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정부지원금) 관련 Q&A



Q1.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기업이 수요기업에게 사업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루션구축 지원사업(수요기업의 현금 및 현물출자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조금 4,900만원+회사부담금 현물 2,100만원일 경우 ⇒ 사업비(7,000만원)+부가가치세(490만원) ⇒ 총 5,390만원 세금계산서 - 정부보조금 9,800만원+회사부담금 현금 1,200만원+회사부담금 현물 3,000만원일 경우 ⇒ 사업비(14,000만원)+부가가치세(1,100만원) ⇒ 총 12,100만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자가 그 공급을 받는자에게 발행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p> <p>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div>
Q2.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며, 증빙이 필요한가요?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기업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후 기술원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게 되므로,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루션구축 지원사업: <u>잔금 신청 시</u> 사업비 전액(선금, 잔금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후 증빙 제출(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금, 잔금에 대한 각각의 세금계산서(2부) 제출도 가능/제출시기는 동일
Q3.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수행기업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p> <p>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p> </div>

Q4.	수요기업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됩니다.(과세사업자에 한함) ◦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확정신고기간의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1월~6월분 신고기한: 7월 25일, 7월~12월분 신고기한: 익년 1월 25일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p> <p>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p> </div>

Q6.	수요기업이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A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p> <p>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p> </div>

Q7.	현금부담금과 현물부담금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한가요? 예) (솔루션구축 지원사업) 수요기업이 사업비에 회사부담금으로 현금부담과 현물출자부담하는 경우 (정부보조금 9,800만원, 회사사업비 부담금 현금 1,200만원, 현물 3,000만원)
A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업의 현물부담분은 수요기업이 노무를 제공하여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수행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관련 거래가 아닙니다. ◦ 수요기업의 현금부담금은 수행기업으로 제공받는 용역이나 재화에 대하여 매입하는 거래와 동일하므로 현금부담분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습니다. ◦ 사업비와 관련되는 회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수행기업이 세금계산서를 12,100만원 발행 시, 부가가치세는 1,100만원 발생하며 수요기업은 1,1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이를 환급받게 됩니다. ◦ 수요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분은 확정신고기한후(A4참조) 환급됩니다.